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 가 공 무 원 복 무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다.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2년 미만이면서”를 “5년 미만이면서”로,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2일”을 “3일”로 한다.

제20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제1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고의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2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단태아인 경우)	10
	배우자(다태아인 경우)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가 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u>2년 미만</u> 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u>2년 미만의</u>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u>2</u> 일을 더한다.	제15조(연가 일수) ① ----- ----- ---. ----- ----- ----- <u>5년 미만</u> <u>이면서</u> ----- ----- ----- <u>5년 미만의</u> - ----- <u>3</u> 일-----.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휴가) ① ~ ⑯ (생략) <u><신 설></u>	제20조(특별휴가) ① ~ ⑯ (현행과 같음) <u>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 각호(제1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u>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고의 인정 기준,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방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복무과	
연 락 처	(044) 201 - 8445